

다음은 忠清北道 學生會館 設置 및 使用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忠清北道 學生會館 設置 및 使用에 관한 條例案

1. 제출자 : 忠清北道 教育監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3. 提案事由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特別活動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忠清北道 學生會館 設置 및 使用에 관한 條例”를 제정하고자 함.

4. 主要骨子

가. 청소년 文藝活動의 空間과 公演場(연극, 영화, 음악등)을 提供하여 문화,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고 人格陶冶를 위한 도서실을 운영함.

나. 조직으로 관장, 총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며,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함.

다.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使用料를 實費로 징수하되 會館의 設立目的에 상응하거나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使用料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사용료 감면율은 教育監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라. 忠清北道 學生회관은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을 흡수 統合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소속공무원을 승계함.

## 5. 檢討意見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학생회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당초 提出 승인인인 「관장을 “지방서기관”에서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한 수정조례안」의 내용은 同法 제41조 제2항에 의한 기 승인사항에 저촉되며 또한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교육기관의 공무원 배치는 당해 시도의 教育費 特別회계가 부담하는 經費로써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도 대통령령에 명백히 規定되어 있지 않고 있음.

나. 또한 同法 제40조 제5항의 規定을 살펴보면 타 시,도(光州, 全北)의 경우 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배치되어 運營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균형 유지에도 문제가 있음.

다. 그러므로 忠清北道教育監의 명의로 제출된 충청북도학생회관 設置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항의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되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는 조항을 “장학관 또는”의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修正案 : 별첨

7. 條例案 : 별첨

8. 制定 및 改正資料 : 별첨

## 忠清北道學生會館設置 및 使用에 관한 條例 修正(案)

제 출 (안)	수 정 (안)
<p>제4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u>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u>으로 보한다.</p>	<p>제4조(관장)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p>

## 관계법령 및 위법성 소지

관계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 법 성 소 지
<p>제41조(教育機關의 設置) ① 教育監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教育監이 제1항의 教育機關을 당해 시·도의 條例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동법 제41조에 의해 학생회관은 교육부장관의 承認(교행 01210-355,91. 9. 6)을 받은 바 있으나 당초 承認事項인 회관장 지방서기관을 수정조례안이 장학관으로도 보직할 수 있도록 한 規定은 제41조 2항에 의한 기승인사항에 저촉되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p>
<p>제42조(공무원의 배치) ① 教育監의 보조기관과 제41조 제1항의 教育機關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定員은 法令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② 教育監의 보조기관과 제41조 제1항의 教育機關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동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면 지방교육機關의 公務員 배치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經費로써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서도 대통령령에 명백히 規定되어 있지 않는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위 조례안이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으로 학생회관장을 보할 수 있도록 한 規定은 동법률 제42조에 위배됨.</p>
<p>제40조 ④ 教育監 밑에 필요한 補助機關을 두되 그 설치 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教育監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設置 運營에 있어서 合理化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均衡을 維持하여야 한다.</p>	<p>제40조 제5항의 規定을 살펴볼때 타시·도(광주, 전북.)의 경우 회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배치되어 運營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타시·도와의 균형 유지에도 문제되며 이는 동조항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p>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